

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

번호	성명	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	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	지원금 신청액	비고
	주민등록번호				
<예사>	홍길동	100시간	400,000원	266,666원	
	800200-1000000				
2					
3					
계					

공지사항

-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(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)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①란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- ②란은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를 적습니다.
-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(월)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일용근로자, 해고·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미만(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)인 사람은 제외합니다.
- ④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근로자 수(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)를 적습니다.
- ⑤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근로시간[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+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(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]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(월) 동안 “③란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”를 적습니다.
- ⑦란은 ⑤에서 ⑥를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(⑦/⑤)×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.
- ⑨란은 ⑦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.
- ⑩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/3, 그 외의 기업은 1/2에 표시합니다.
- ⑪란은 ⑨에 ⑩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⑫란은 사업주 명의(법인은 법인명의) 계좌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